

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196호(2012.07.26.)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2015.12.01.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-54호(2021.03.25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-122호(2025.08.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125호(2022.08.18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4-132호(2024.11.0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(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)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2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

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89,332.5㎡

라. 사업시행자의 명칭 :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최형용)

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167, 3층(흑석동)

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2. 8. 18.

사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26. 3. 30.

아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분		대지면적(㎡)	동수	층수	세대수	연면적(㎡)
공동주택	소계	70,328.1	30	지하6층 ~지상16층	1,515	289,347.1
	분양	62,276.7	28		1,249	256,295.7
	임대	8,051.4	2		266	33,051.4
상가		443.5	2	지하3층	20	1,824.7

2) 토지이용계획

총 계 (㎡)	택 지(㎡)				정비기반시설 등(㎡)					
	소 계	공동주택	단독주택	그 밖의 건축시설	소 계	도로	공원	녹지	문화시설	공공청사
89,332.5	72,552.5	70,771.7	-	1,780.8 (종교시설)	16,780	3,903.9	5,336.1	1,557.6	3,048.5	2,933.9

3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분	타입	계	조합원	보류지	일반분양	임대
주택규모별 (전용면적 기준) 공급세대수	39A	106	1		8	97
	39B	22				22
	39C	22				22
	49A	74	3		7	64
	49B	28				28
	59A	297	84	2	200	11
	59B	12	4		8	0
	59C	57	3		49	5
	59C-A	22	4		13	5
	59D	126	16		103	7
	59E	30	11	1	13	5
	84A	423	402		21	
	84B	19	18	1		
	84C	117	107		10	
	84D	9	9			
	84E	61	58	3		
	84F	30	30			
	114A	46	46			
	114B	12	12			
	150A	2	2			
소 계		1,515	810	7	432	266
상가면적(㎡)		1,824.73	-	-	-	-

※ 관련 법령에 부적합 한 분양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, 향후 관리처분계획(분양계획) 변경될 수 있음

4)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

구 분 (㎡)	신 설(㎡)					용도폐지(㎡)			
	도로	공원	녹지	문화시설	공공시설	도로	공원	대지	임야
규 모	3,903.9	5,336.1	1,557.6	3,048.5	2,933.9	16,164.5	2,742.6	670.2	2,237.4